

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9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- 발의자: 임미연 의원 등 8명(강한곤, 권숙자, 이영빈, 김장관, 도하석, 서보영, 김기열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(수)
- 회부일자: 2024. 11. 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(2024. 11. 29.)

2. 제안이유

-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과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, 동물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인 「동물보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과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(안 전체)
-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- 등록대상동물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)
- 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8조, 제9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 및 제15조
 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4. 11. 6. ~ 11. 17.)결과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동물보호법」(2022. 4. 26. 전부개정, 2024. 4. 27. 시행) 및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(2023. 4. 27. 전부개정, 2023. 12. 14. 시행)에 따라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, 등록대상동물 및 관련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※ 우리구 동물등록 현황

연도	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RFID 칩)종류			합계
	내장형		외장형	
	개	고양이	개	
2022	759	151	1,822	2,732
2023	624	208	1,457	2,289
2024. 10월말	523	132	1228	1,883

- 등록대상: 2개월 이상의 개(고양이는 선택사항, 내장형만 가능)

-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,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신설하여 등록대상동물, 등록 및 등록대행,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 규정

하였으며, 안 제8조 중 맹견의 출입금지 시설에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기구를 추가로 신설하였음.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가구의 지속적인 급증에 따른 동물복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실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,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종합적인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